

의안번호	2205224
의 퇴 인	정혜경의원
회 답 일	2024.12.27.
추계번호	24B477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u>2의2. “무급가족종사자”란 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u>	의무규정
2	안 제3조(기준 보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나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할 수 있음(제1항) <u>2.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u>	재량규정
3	안 제13조(보험료)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u>보수총액(여러 사업자로부터 근로자로서 보수를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한다)</u> 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함.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함(제2항) <u>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 제59조의4에 따라 재충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기간동안 사업주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6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제7항 신설)</u>	의무규정
4	안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건설업, 농림어업</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름(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근로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 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함(제1항)	
6	안 제16조의 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3항 단서 삭제)	의무규정
7	안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거나 노무를 제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재량규정
		국가는 천재지변, 경제위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거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5까지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25조(연체금의 징수)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고용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어떠한 종류의 피보험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청구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9	안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삭제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함.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함(제6항 삭제)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제10항 삭제)	의무규정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함(제11항 삭제)	재량·의무규정
10	안 제48조의8 (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3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자(이하 이 조에서 “자원봉사자”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함(제1항) 자원봉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2항)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11	안 제48조의9 (산재보험 예술 인의 산재보험 특례) 신설	산재보험 예술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됨(제1항)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 예술인의 월별보험료(산재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제2항)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 예술인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함.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제3항) 사업주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직종의 산재보험 예술인이 부상·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가 발생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해당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4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예술인의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음(제5항) 산재보험 예술인의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예술인과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제6항)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예술인의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음(제7항) 산재보험 예술인의 월 보수액 정정 신고 및 산재보험료 정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제8항) 산재보험 예술인의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9항) 산재보험 예술인의 산재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함(제10항) 1. 산재보험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함.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예술인”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봄 2. 산재보험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6조의2, 제16조의4,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예술인”으로, “산재보험료율”은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로 봄 3. 산재보험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함.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예술인”으로 봄 4. 산재보험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제1항·제3항,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이 경우 “근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로자”는 “산재보험 예술인”으로 봄	
12	안 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삭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u>자영업자</u> (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u>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됨. 이 경우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은 제외함(제1항)</u>	의무규정
13	안 제49조의6 (<u>농림어업인에 대한 특례</u>) 신설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9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농림어업인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제1항)	의무규정
		농림어업인은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보수액을 선택한 것으로 봄(제2항)	
		농림어업인이 제2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농림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제4항)	의무규정
		농림어업인은 당해 보험연도에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함(제5항)	
14	안 제49조의7 (<u>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특례</u>) 신설	제49조의2제1항의 자영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인 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영업(해당 자영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도 그 중 한 사업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자영업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자영업자의 배우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인 피보험자가 될 경우, 해당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인 배우자는 해당 자영업 소득의 각 100분의 50을 얻은 것으로 봄. 다만, 무급가족종사자인 배우자는 공단에 해당 자영업 소득의 100분의 30에서 70까지의 범위 내에서 소득비율을 달리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자영업자는 위 신고 소득비율을 공제한 나머지를 얻은 것으로 봄(제2항)	의무규정
		배우자 외의 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인 피보험자가 될 경우에는 제3조의 기준보수를 보수액으로 함(제3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무급가족종사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과세소득액에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함(제4항) 고용보험에 가입한 무급가족종사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함(제5항)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에 대하여는 제7조제3호,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하고, 보험료의 부과·납부 등은 종사하는 사업이 농림어업인 경우에는 제49조의6에, 그 밖의 경우에는 제49조의2에 따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6항)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	• 미대상 － 개정조항은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2	안 제3조(기준 보수)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준보수 산정에 있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의 기준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기준보수의 변화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대상자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3	안 제13조(보 험료)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제2항) 개정안은 보수총액 산정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있어 신고 대상을 확대하면서, 여러 사업자로부터 근로자로서 보수를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사업대상자의 변화와 보수총액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장래에 발생할 보험료의 변화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제7항) 재충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기간동안 사업주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산정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충전급여의 사용자 수 및 이들의 보험료 등에 대해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4	안 제16조의2 (보험료의 부과·징수)	—	• 미대상 － 현행법에 따라 고용보험료 등은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별도의 부과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 개정조항은 농림어업 사업주도 통상적인 부과방식이 아닌 건설업과 같은 부과방식을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5	안 제16조의3 (월별보험료의 산정)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현행법은 노무제공자의 월별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특례조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무제공자도 월별보험료 산정 조항(제16조의3)을 적용받게 되므로,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변화로 인해 기금의 수입이 증감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월별보험료의 산정방법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음 － 즉,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시액과 장래에 발생할 대통령령의 세부 내용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
6	안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현행법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고용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증가할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노동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7	안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제1항)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가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 지출책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확정하여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산출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며,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곤란 - 또한 개정안에 따른 지원규모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되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재정지출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움 - 참고로 2024년 국가는 시행 중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의 일부(80.0%)를 지원하고 있음 - (제2항)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천재지변, 경제위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거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인 특수한 사유를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며,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 또한 지원규모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되므로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재정지출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곤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8	안 제25조(연체금의 징수)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에 있어 사업주가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어떠한 종류의 피보험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청구한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으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연체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연체금 수입 감소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9	안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삭제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10	안 제48조의8(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 신설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재보험기금의 보험료 수입이 확대되고, 보험료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음의 이유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첫째, 개정안은 자원봉사자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자원봉사자의 노동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1	안 제48조의9 (산재보험 예술인의 산재보험 특례) 신설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산재보험 예술인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예술인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재보험기금의 보험료 수입이 확대되고, 보험료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음의 이유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첫째, 개정안에 따른 산재보험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나, 예술인의 소득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소득과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또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을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산재보험 예술인의 노동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셋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산재보험 예술인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확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12	안 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삭제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3	안 제49조의6 (농림어업인에 대한 특례) 신설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여 농림어업인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재보험기금의 보험료 수입이 확대되고, 보험료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음의 이유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첫째, 개정안은 농림어업인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에 대해 농림어업인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둘째, 개정안은 농림어업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장래의 발생할 농림어업인의 선택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셋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농림어업인의 노동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14	안 제49조의7 (무급가족종사 자에 대한 특 례) 신설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당연적용),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가입제도를 병행하여 시행

-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나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노무제공자¹⁾, 현장실습생²⁾, 자활급여 수급자³⁾, 학생연구자⁴⁾ 등의 경우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례조항에 따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됨
 - － 중·소기업사업주⁵⁾ 및 가족종사자(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⁶⁾, 해외파견자 등 임의가입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공단이 이를 승인할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안 제49조의2)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

-
- 1)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가전제품설치기사, 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프리랜서, 방문판매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원 등
 -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 고교(일반계고, 직업계고), 대학(전문대학, 대학) 등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국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 : 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수급자
 - 4) 학생연구자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사람
 - 5)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
 - 6) 무급가족종사자란,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재보험 가입대상자가 확대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자영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재보험기금의 보험료 수입이 확대되고, 보험료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음의 이유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첫째,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과세소득총액(여러 사업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다)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둘째, 개정안은 농림어업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원하는 혜택 수준을 고려하여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장래의 발생할 농림어업인의 선택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셋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농림어업인의 노동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안 제49조의7)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인 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영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인 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영업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자영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인 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액(이하 수입증가분)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에 따른 구직급여 증가액(이하 지출증가분)이나 다음의 사유로 추가재정소요를 검토하기 어려움
- 첫째, 개정안은 자영업자와 그 사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인 배우자

는 해당 자영업 소득의 각각 50%를 얻은 것으로 보며, 무급가족종사자인 배우자는 공단에 해당 자영업 소득의 30~70%의 범위 내에서 소득비율을 달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무급가족종사자인 배우자의 소득은 장래에 발생할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소득 신고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시점에서 향후 발생할 자영업자의 소득과 소득 신고율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인 배우자의 노동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또한 현시점에 장래에 발생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인 배우자의 고용보험 등에 대한 가입률과 공단의 승인률 등에 대해 검토하기 어려워 사업대상자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